

# 울동위드유 아파트 **선착순**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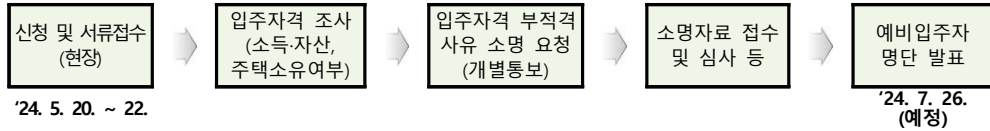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4. 4. 26.)

- 울산광역시도시공사에서는 유선전화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신청자 개인의 복잡한 상황에 대한 설명 누락 또는 부정확한 정보제공 등에 기인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신청과 관련한 상담은 신청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고 반드시 공고문을 읽어보시기 바라며, 신청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울산도시공사 주택사업팀(052-219-8453)**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오니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 선정절차 및 일정】



- ‘24. 5. 20. ~ 22.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최초입주자 모집공고 및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이후 잔여세대 공급을 위한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로 **선착순 모집**입니다.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4. 4. 26.(금)**이며, 이는 신청자격조건(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및 자산 등) 등의 판단 기준일입니다.
- 국민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30년 이상 장기임대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서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되지 않는 임대주택입니다.
- 주택형별 신청일자가 다르며, **지정된 접수일자 외에는 다른 주택형의 신청이 불가합니다.(4. 신청방법 참조)**
-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성년자(만19세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 가능(1세대 1주택)**하며 **공급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무주택세대구성원 1인 이상이 중복 신청하여 한 곳이라도 예비입주자로 선정되거나 2세대 이상의 공급신청자 사이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중복될 경우, 그 외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배우자가 세대분리하여 중복 신청하는 경우도 포함)하며 계약체결 후에 적발되는 경우 계약이 해제됩니다.
- 신청서의 주소지는 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고 있으니,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신청하시어 안내문 수령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독세대주는 신청자 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는 자를 말하며 40㎡이하의 주택만 신청 가능합니다.(3. 신청자격의 단독세대주 제한 참조)**
- 예비입주자는 공가세대 발생 등을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입주순번에 따라 순차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므로 입주 시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금회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어 향후 신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세대는 기존 입주자의 계약해지로 인해 발생한 퇴거세대에 입주하게 되므로 당해 주택의 도배, 장판 등 내부시설물이 최초 입주 시의 상태와 다르거나 일부 노후화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은 2년마다 갱신하며, **최초 임대차계약 종료일은 단지별로 정한 임대기간 만료일을 따르므로, 입주 시기에 따라 최초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 미만일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등을 고려하여 증액될 수 있습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 법령에 따르며,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준용하므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문(울산도시공사 홈페이지 → 공지/공고 → 임대공고) 등을 통해 단지여건 등을 충분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주택에 대한 사전 내부관람은 불가합니다.

- **입주자격 검증**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일정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주택 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 12. 11., 일부개정)」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됨.**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국민↔국민)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①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되면 **중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신청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탈락 처리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 12. 30.)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입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 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명의자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 금융정보 조회 시 유효

\*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 (명의인에게는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이 발생함

1. 단지개요 : 울산광역시 북구 울동로 68

단지명	주소	건설호수	최초입주
울동위드유 아파트	울산광역시 북구 울동로68	4개동, 437세대	'22. 10.

2. 임대대상 및 조건

■ 임대대상

주택형	세대 당 계약면적(m <sup>2</sup> )					해당동	건물구조 난방방식	건설호수	공가	대기 중인 예비자 수 (명)	모집할 예비자 수 (명)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합계						
			기타 공용	지하 주차장							
26A	26.05	12.94	2.05	18.13	59.17	101, 104	철근 콘크리트 벽식구조 · 개별난방	120	3	6	60
26B (주거약자용)	26.11	12.87	2.05	18.18	59.21	101, 104		15	0	3	0
34A	34.39	16.65	2.70	23.94	77.68	102		76	1	27	30
44A	44.13	20.79	3.47	30.72	99.11	101, 102 103, 104		218	3	60	0
44B (주거약자용)	44.24	20.66	3.48	30.80	99.18	101, 104		8	0	1	5

■ 임대조건

주택형	표준임대조건(원)				전환조건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임대보증금(원)		월임대료(원)
	계(100%)	계약금(20%)	잔금(80%)				
26A/B	9,564,000	1,913,000	7,651,000	145,000	1	14,607,000	120,000
					2	19,650,000	95,000
					3(초대)	24,693,000	69,000
34A	15,933,000	3,187,000	12,746,000	200,000	1	22,870,000	165,000
					2	29,807,000	131,000
					3(초대)	36,744,000	96,000
44A/B	25,015,000	5,003,000	20,012,000	237,000	1	33,254,000	196,000
					2	41,494,000	155,000
					3(초대)	49,733,000	114,000

-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은 주거약자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주거약자에 해당하는 사람(고령자, 장애인)으로서 주거약자 편의 시설이 설치된 주택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거약자용 주택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약자 해당여부는 3. 신청자격 참고)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에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새시 설치에 따라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위 임대조건에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위 최대 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은 6% 입니다.

3. 신청자격

**모집공고일(2024. 4. 26.)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계약 취소 및 계약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 과거 공공임대주택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해당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 성년자

-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무주택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분양권 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 (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 등은 제외)													
세대구성원	<b>■ 세대구성원의 범위</b> <table border="1"> <thead> <tr> <th>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신청자</td> <td></td> </tr> <tr> <td>• 신청자의 배우자</td> <td>신청자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td> </tr> <tr> <td>•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td> <td>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td> </tr> <tr> <td>•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td> <td>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td> </tr> <tr> <td>•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td> <td>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td> </tr> </tbody> </table>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b>■ 단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b>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외국인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제외													
<b>■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b> <b>■ 배우자의 자격검증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b>														
①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인 경우 ② 배우자가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 ③ 배우자가 주민등록말소자, 거주불명자 등인 경우														
<b>■ 단, 아래의 경우에는 배우자를 세대구성원에서 제외하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b>														
①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한 사실이 없는 경우 ② 배우자가 외국인등록을 신청한 후 등록 전인 경우														

※ 1세대 1주택 신청·공공원칙에 따라 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단, 임대주택에 기 거주중인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분리 하더라도 중복임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 세대구성원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세대구성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 7. 그 밖에 제1항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단독세대주 제한

- 단독세대주는 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를 말하며, **전용면적 40㎡이하 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단독세대주임에도 불구하고 전용면적 50㎡미만까지 신청가능하며, 중증장애인 확인서 상 중증장애인 표기가 되어 있어야 함(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및 장애인증명서 불가)
- 단, 단독세대주 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혼인 중이 아닌 미성년 형제, 자매(단, 부모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함) ②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외국인 배우자 ③ 임신 중인 단독세대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전용면적 40㎡ 초과주택 신청 가능 합니다.
- \* 위 경우에 해당하여 40㎡초과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구성원은 전원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세대구성원이 신청자와 등본 상 분리된 배우자 총 2명인 경우 단독세대주로서 전용면적 40㎡초과 신청 불가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세대구성확인서 상 신청인세대에 신청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으면 40㎡초과 신청 불가.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구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소득	가구원수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기준	참고사항	
	1인가구	90%	3,134,668원이하		
	2인가구	80%	4,332,570원이하		
	3인가구	70%	5,039,054원이하		
	4인가구		5,773,927원이하		
	5인가구		6,142,550원이하		
	6인가구		6,694,297원이하		
	7인가구		7,246,045원이하		
	8인가구		7,797,793원이하		
총자산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34,5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708만원 이하				

■ 소득·자산 산정방법

-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이며,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입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구분	산정방법	
소득	<p>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li> <li>•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li> <li>•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li> <li>•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li> </ul>	
부동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가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 공시가격</li> </ul> </li> <li>•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li> </ul> </li> <li>•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li> <li>-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li> <li>-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li> <li>-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li> </ul> </li> </ul> </li> </ul>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li> <li>•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li> <li>-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li> </ul> </li> <li>•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li> </ul>
	금융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li> <li>•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li> <li>•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li> <li>•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li> <li>• 연금저축: 잔액 또는 총납입액</li> <li>•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li> <li>•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li> </ul>
기타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li> <li>•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li> <li>•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li> <li>•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li> <li>•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li> <li>•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임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li> <li>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li> </ul> </li> <li>•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임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li> </ul>	

<b>부채</b> (총자산 산정 시 자산할계금액에서 차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li> <li>공공기관 대출금</li> <li>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li> <li>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li> <li>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li> </ul>
<b>자동차</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b>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b>.</li> <li>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b>비영업용 승용자동차</b>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b>높은 차량가액</b>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li> <li>-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li> </ul> </li> <li>「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함.</li> </ul>

■ 주거약자

“주거약자” 란?

국민임대주택 일반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춘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 고령자(만 65세 이상인 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 「고용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업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4. 신청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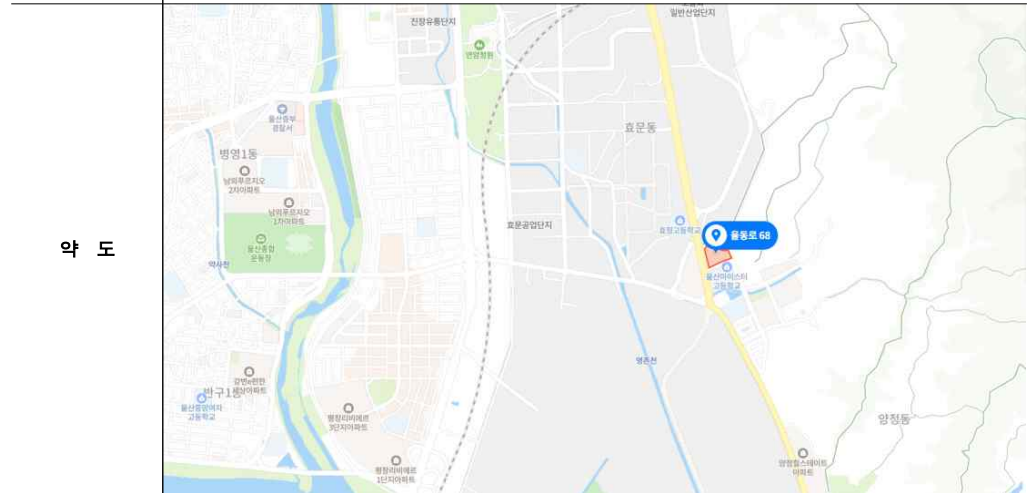
■ 모집일정

주택형	일 정	방 법	장 소
일반 (26A, 34A)	2024. 5. 20.(월) (10:00 ~ 16:00)	방문접수	울동위드유 관리사무소 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 울동로 68)
주거약자 (44B)	2024. 5. 21.(화) (10:00 ~ 16:00)		
전체	2024. 5. 22.(수) (10:00 ~ 16:00)		

- 지정된 장소 및 시간에만 접수가 가능하며 **점심시간(12:00 ~ 13:00)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신청 당일 유효하지 않은 서류는 접수가 불가하며, 신청 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하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택형별 신청일자가 다르며, **지정된 접수일자 외에는 다른 주택형의 신청이 불가**합니다.
- 접수서류 미구비에 따른 접수순번 변동은 신청자의 책임이므로, 공고문을 확인하여 사전에 준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장소

구 분	세 부 내 용
주 소	울산광역시 북구 울동로 68, 울동위드유아파트 관리사무소 회의실



5. 신청서류(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4. 4. 26.) 이후 발급분에 한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계약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모든 제출서류는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2024. 4. 26.) 이후 발급분에 한함**
- ※ 일부 서류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 시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기관 문의 후 미리 관련 서류 발급 요망
-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
-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위·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는 예비입주자 선정 및 계약이 취소됨
-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며, 부적격 선정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

■ 기본 제출서류 (신청자 전원 필수 제출)

구비서류	비 고	부수
신분증 사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지참</li> <li><b>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b></li> </ul>	각 1통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상자 : 세대구성원 전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전원)</li> <li>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li> <li>(동의방법) 공고 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li> </ul>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능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li> <li>*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표시되어야 함) (공사 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일 경우 제출 불필요)</li> <li>*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li> <li>*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증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li> <li>*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li> <li>※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li> </ul>	
	서약서	• 신청자 본인 서명	
필수 서류	주민등록표등본 (전부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li> <li>※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1통 추가 제출</li> <li>※ <b>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b></li> </ul>	1통
	주민등록표초본 (전부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li> <li>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신청자 포함)</li> </ul>	1통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p>&lt;아래 해당자는 반드시 제출&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li> <li>※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등 사본 추가</li> <li>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 등(ex 동거인 무주택세대구성원 확인 필요한 경우)</li> <li>주민등록표등본상 미성년 자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li> <li>※ 단, 이혼.재혼의 경우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자녀만 인정</li> <li>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외의 사람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세대원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li> </ul>	1통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p>&lt;아래 해당자만 제출&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li> <li>※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등 사본 추가</li> <li>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 등(ex 동거인 무주택세대구성원 확인 필요한 경우)</li> <li>주민등록표등본상 미성년 자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li> <li>※ 단, 이혼.재혼의 경우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자녀만 인정</li> <li>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외의 사람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세대원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li> </ul>	1통

대상 자	(신청자의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p>&lt;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으나 신청자의(상세)가족관계증명서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세대분리배우자)&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받아 제출</li> </ul>	1통
	(신청자의 배우자) 외국인 등록증 사본	<p>&lt;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국인등록증 사본이 없는 경우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제출 가능</li> <li>※외국인배우자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시 제출 생략 가능</li> </ul>	1통
	(신청자의 배우자) 국내거소신고증	<p>&lt;배우자가 재외동포인 경우&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내거소 신고증이 없는 경우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제출 가능</li> </ul>	1통
	예비신혼부부 신청확인서 (붙임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 세대구성 확인서, 예비배우자 신분증 사본</li> <li>예비신혼부부 당사자 2인 모두 주민등록표등본 제출</li> </ul>	1통
	예비신혼부부 세대구성 확인서 (붙임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외의 사람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세대원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상세)가족관계증명서 제출</li> </ul>	
	임신진단서 /입양관계증명서	<p>&lt;아래 해당자만 제출&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월평균소득기준의 가구원수에서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임신 중인 단독 세대주</li> <li>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li> <li>입양관계증명서</li> </ul>	1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	<p>&lt;아래 해당자만 제출&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증장애인이 전용면적 40~50㎡미만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li> <li><b>중증장애인 확인서 상 중증장애인 표기가 되어 있어야 함</b>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및 장애인증명서 불가)</li> </ul>	1통
	기타서류	• 그 밖에 추가 증빙이 필요한 경우 해당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본인 또는 대리인 추가 구비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본인 직접 신청할 때	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신청자) 도장 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① (인감증명방식)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붙임서류 3호 공사서식), 본인(신청자)의 인감도장 ② (본인서명방식)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붙임서류 3호 공사서식)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③ 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주거약자용 주택공급 대상자 추가 제출서류(해당자만 제출)

공급대상	제출서류	발급처
① 고령자(만 65세 이상인 자)	주민등록표등본	(별도제출 없음)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행정복지센터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국가유공자 확인원	국가보훈처 각 지청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12. 7. 1.전 등록자 : 지원대상자 확인원 '12. 7. 1.이후 등록자 :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5·18 민주유공자 확인원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6. 예비입주자 명단 발표 및 계약안내

■ 예비입주자 명단 발표 : '24. 7. 26.(금) 17:00 이후

- 상기 일정은 입주자격 조회 등의 일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안내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 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 드리니, 예비입주자 선정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도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 하며 소명이 불가할 경우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합니다.
-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추후 공사발생 여부에 따라 예비순번대로 계약이 진행되며, 계약일정은 개별 안내드리며, 공사발생 순서대로 배정하므로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순위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분양·임대·보상 → 임대정보 → 입주대기자현황)

7. 유의사항

관련항목	유의사항																
임대대상 및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주 시기에 따라 최초임대차계약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으며 임대기간 만료일을 따라야 합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li> <li>•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li> <li>•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li> <li>• (갱신시) 입주기준소득 및 자산을 초과한 입주자는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소득기준 초과비율이 50%를 초과하거나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단 1회에 한해 재계약 가능)하여야 합니다.</li> <li>* 소득기준 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에 따른 할증은 갱신계약시 인상되는 비율(연5%이내)을 반영한 금액에서 할증됩니다.</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소득기준 초과비율</th> <th colspan="2">할증비율</th> </tr> <tr> <th>소득초과자의 최초 갱신계약시</th> <th>소득초과자의 2회차 이상 갱신계약시</th> </tr> </thead> <tbody> <tr> <td>10%이하</td> <td>100%</td> <td>110%</td> </tr> <tr> <td>10%초과 30%이하</td> <td>110%</td> <td>120%</td> </tr> <tr> <td>30%초과 50%이하</td> <td>120%</td> <td>140%</td> </tr> <tr> <td>소득기준 초과비율 50% 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td> <td colspan="2">140% (*퇴거사유이나, 1회에 한해 재계약 체결하는 경우의 할증비율)</td> </tr> </tbody> </table>	소득기준 초과비율	할증비율		소득초과자의 최초 갱신계약시	소득초과자의 2회차 이상 갱신계약시	10%이하	100%	110%	10%초과 30%이하	110%	120%	30%초과 50%이하	120%	140%	소득기준 초과비율 50% 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	140% (*퇴거사유이나, 1회에 한해 재계약 체결하는 경우의 할증비율)
소득기준 초과비율	할증비율																
	소득초과자의 최초 갱신계약시	소득초과자의 2회차 이상 갱신계약시															
10%이하	100%	110%															
10%초과 30%이하	110%	120%															
30%초과 50%이하	120%	140%															
소득기준 초과비율 50% 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	140% (*퇴거사유이나, 1회에 한해 재계약 체결하는 경우의 할증비율)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자가 모집 또는 신청 당시에는 단독세대주가 아니었으나, 신청 또는 입주 이후 단독세대주가 된 경우에는 전용 40㎡이하 예비입주자 신청서를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예비입주자 최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고 순번 도래시까지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 가능) 전용 40㎡이하 주택으로 이주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li> <li>• 이 주택의 당첨자·예비입주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 및 계약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li> <li>• 주택소유,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예비입주자 자격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li> <li>•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릅니다.</li> <li>• 국민임대주택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신청자격, 소득, 총자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 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청시 제출</li> </ul>																
입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청시 제출</li> </ul>																



<b>선 정 신청서류</b>	<p>하는 서류는 <b>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후 발행된 것</b>이어야 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li> <li>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li> </ul>
<b>중복입주 금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 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li> <li>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할 때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중복 입주하고 있는 주택 중 어느 한 쪽의 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li> <li>공공임대주택은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하나의 공고에 대해 다수의 세대구성원이 중복 신청할 경우 <b>전부 무효 처리됩니다.</b> 다만,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구성원이 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계약 또는 입주 전 세대 분리를 하는 경우 중복입주로 보지 않아 본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 ※ 단, 배우자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li> </ul>
<b>계약안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비입주자 선정 이후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우리공사(052-219-8453)에 통보하기 바랍니다.</li> <li>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기 납부한 계약금은 소정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합니다.</li> </ul>
<b>기타사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li> <li>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li> <li>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입주일은 해당 주택의 열쇠교부일이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종료일을 입주일로 봅니다.</li> <li>입주 시 잔금의 납부 및 임차인이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 연체료가 부과됩니다.</li> <li>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li> <li>해당 아파트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 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li> <li>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li> <li>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 및 고지서를 원칙으로 하며, 자동이체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li> </ul>

2024. 4. 26.

**[별지 제1호]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 분양권 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 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 등의 상속·증여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울산광역시도시공사)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④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20㎡ 이하의 주택(20㎡ 이하 주택에 대한 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⑦ 무허가 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

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단,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 등을 취득한 경우

⑩ 보유한 분양권 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별지 제2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 근로복지공단 월평균보수 (1)산재보험, 2)고용보험 - 국민연금공단 기준소득월액 - 장애인고용공단 보수월액 - 국제청중합소득금액(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 고용노동부 일용근로소득내역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고용노동부 직접일자리사업 근로내역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 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 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 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임대소득	부동산, 동산, 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재산 소득	이자소득	예금, 주식, 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기타 소득	연금소득	연금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 기타상품(일시금으로 받는 상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일반 자산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인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 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지방세정 자료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총자산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약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국토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선박·항공기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 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지방세정 자료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기타 자산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금융자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 금융정보 조회결과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 금융정보 조회결과
부채 (총자산 산정 시)	금융기관 대출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자산금액 합계에서 차감)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임대보증금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별지 제3호] 장애인의 장애 정도 구분(「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장애인의 장애 정도')**

- 1. 지체장애인**
- 가.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
-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가)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 나)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은 사람
    - 다) 두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Chopart's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라)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가)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 다)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라) 한 다리를 발목발허리관절(lisfranc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마)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나. 관절장애가 있는 사람
-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가)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나)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 다)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라)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사)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아)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자)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가)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다)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라)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 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하나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사)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아)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 자)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차)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다. 지체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가) 두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나) 두 손의 엄지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다)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라) 한 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마) 한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바) 두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사)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기능을 잃은 사람
-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가) 한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다)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라)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마)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바)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사) 한 다리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아)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기능이 저하된 사람
- 라. 신체에 변형 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함)
- 1)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센티미터 이상 짧거나 건강한 다리 길이의 15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 2) 척추옆굽음증(척추측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
  - 3) 척추뒤굽음증(척추후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60도 이상인 사람
  - 4) 성장이 멈춘 만 18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 5) 성장이 멈춘 만 16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신장이 140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 6) 연골무형성증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사람
- 2. 뇌병변장애인**
-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보행 또는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 2) 보행이 경미하게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히 제한된 사람
-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보행 시 절뚝거림을 보이거나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경미하게 제한된 사람
- 3. 시각장애인**
-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좋은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로 측정된 것을 말하며,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은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0.06 이하인 사람
  -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3)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퍼센트 이상 감소한 사람
  - 4)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 4. 청각장애인**
- 가. 청력을 잃은 사람
-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귀에 입을 대고 큰소리로 말을 해도 듣지 못하는 사람)
  -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나) 두 귀의 청력을 각각 6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발생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다) 한 귀의 청력을 80데시벨 이상 잃고, 다른 귀의 청력을 4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
- 나.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로 두 눈을 뜨고 직선으로 10미터 이상을 지속적으로 걸을 수 없는 사람
  -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평형기능의 감소로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고, 복합적인 신체운동이 어려운 사람
- 5. 언어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을 잃은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음성·언어만으로는 의사소통을 하기 곤란할 정도로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지적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7. 자폐성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제10차 국제질병사인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기준에 따른 전발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않고,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

**8. 정신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가. 조현병으로 인한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않은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나.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礙,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에 따른 기분·의욕·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현저하지는 않으나, 증상이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다. 재발성 우울장애로 기분·의욕·행동 등에 대한 우울 증상이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라.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礙)로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9. 심장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성심부전증으로 3개월 이상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10. 심장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가정에서 가벼운 활동은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을 하면 심부전증상이나 협심증증상 등이 나타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11. 호흡기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기관절개관을 유지하고 24시간 인공호흡기로 생활하는 사람  
2)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장애로 평지에서 보행해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날숨량) 또는 폐확산능(폐로 유입된 공기가 혈액내로 녹아드는 정도)이 정상예측치의 40퍼센트 이하이거나 안정시 자연호흡상태에서의 동맥혈 산소분압이 65밀리미터수은주(mmHg) 이하인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폐를 이식받은 사람  
2) 늑막루가 있는 사람

**12. 간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평가상 C등급인 사람  
2)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평가상 B등급이면서 난치성 복수(腹水)가 있거나 간성뇌증 등의 합병증이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간을 이식받은 사람

**13. 안면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노출된 안면부의 75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2) 노출된 안면부의 50퍼센트 이상이 변형되고 코 형태의 3분의 2 이상이 없어진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노출된 안면부의 45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2) 코 형태의 3분의 1 이상이 없어진 사람

**14. 장루·요루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배변을 위한 말단 공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2)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3)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진 사람  
2) 방광루를 가진 사람

**15. 뇌전증장애인**  
가. 성인 뇌전증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6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5회 이상을 연 1회, 경중 발작은 월 10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발작으로 인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질,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3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1회 이상을 연 1회, 경중 발작은 월 2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이에 따라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곤란한 사람  
나. 소아청소년 뇌전증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16.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를 둘 이상 가진 장애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가 같은 부위에 중복된 경우  
나.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가 중복된 경우  
다. 그 밖에 중복장애로 합산하여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별지 제4호] 조감도 및 세대별 평면도

■ 조감도



■ 평면도



\* 상기 조감도와 평면도는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